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0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 : 김 윤 · 조인철 · 이기헌

남인순 · 모경종 · 박정현

황정아 · 장종태 · 김선민

강경숙 • 문진석 • 김남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, 낡은 현행 「의료법」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
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,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, 시민대표,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」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제2조제3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료인) ①・② (생 략)	제2조(의료인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</u> 이
<u><신 설></u>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
	료인력지원법」 제8조의2에 따
	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
	회의 심의・의결을 거쳐 제2항
	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 임무의
	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고시할
	<u>수 있다.</u>